

## 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대형기선저인망수협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3. 30.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견책(3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#### 4. 제재대상 사실

-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부적정
- 주택건설자금 심사시 자기자본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였고, 이후 연체되어 부실이 발생하였음.

#### < 관련법규 >
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3편 제48조(대출금의 지급), 제5편 제455조(대출한도), 제460조(대출금의 지급)
- 「회원조합 감사규정」 제31조(직원에 대한 제재)
- 「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」 제12조(징계양정기준)